

## 제20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10. 2. 26(금), 16:00~18:00

2. 장 소 : 율곡관 제1회의실

3. 참 석 : 총 13명 중 10명 참석

- 참석 평의원 : 박영무 의장, 조중열 평의원, 이재호 평의원, 오동석 평의원, 박철균 평의원, 김용호 평의원, 임원형 평의원, 이해진 평의원, 김관균 평의원, 박운규 평의원(이상 10명)
- 불참 평의원 : 주동표 부의장, 임재수 평의원, 박상호 평의원(이상 3명)

4. 회의안건

- 논의사항
  - 이수훈 차기 총장 내정자의 승진 관련 연구업적자료 및 심사평가자료 관련
  - 이수훈 차기 총장 내정자의 학문윤리 위반 등 관련
  - 이수훈 차기 총장 내정자 지도학생 박사학위 부정사건 관련
- 심의사항 :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

5. 개회선언

의장 박영무 : 반갑습니다. 재적평의원 13명 중 10의 평의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원회 회의 개최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수훈 차기총장 내정자의 연구 윤리 부정 건에 대한 연구처, 대학원, 교무처의 답변을 듣고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훈 차기총장 내정자와 관련한 부적절한 사례는 부교수, 정교수 승진 시에 실적을 이중으로 사용하여 승진한 의혹과 2003, 2006년 졸업한 지도 박사과정학생의 논문의 거의 대부분이 일치하는 것, 그리고 많은 저널 논문들이 중복게재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학원장님 오셨습니다. 대학원장님께서 2006년 졸업한 문 모 학생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대학원위원회의 회의결과 및 경과를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대학원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 간서명 란 >

의 

대학원장 안재환 : 제가 대학원장으로 마지막인 것 같은데 제가 꼭 와야 하는가에 대한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2월말로 대학원장직을 사직이지만 사안이 긴급하고 초미의 관심사라는 것을 감안하여 왔습니다. 지난 주 수요일(2.24일) 대학원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저희가 지난 주말에 교수회에서 총장님실로 논문작성에 대한 조사 요청 연락이 왔고 저희는 목요일 저녁에 총장실에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요일(2.19일)과 월요일(2.22일)에 심사위원이었던 분을 만나 예비조사를 하였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문제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수요일 전체 대학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학원위원들이 논문을 검토했고 답변에 쓴 것처럼 논문의 기술상에서는 유사성이 상당히 많고 두 학생의 학적을 살펴보니 2~3년간 대학원생활이 겹치고 있어요. 따라서 두 학생이 공동연구에 대한 개념이 있을 수 있다는 확률도 있기 때문에 논문결과 및 연구방법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인데 논문결과가 상당히 똑같은데 그것을 공동으로 같이 쓸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어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소위원회는 내부위원 3인(위원장 1, 위원 2인), 외부위원 1인(소음진동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첫 회의는 2.25(목) 실시하였으며 관련 자료를 보내드렸고 소위원회 위원들께 위촉장도 수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의 결과보고는 3.15(월)까지로 되어 있으나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내주까지 심사결과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문가에게 요청한 검토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청사항1 : 두 학위논문에서의 연구목적, 방법과 연구결과 부분을 검토하여 연구실험 결과의 표절에 대한 의견 제시
- 요청사항2 : 두 학위논문이 차이가 있는 경우 2006년 박사학위 취득논문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으로서의 적절성 여부

이상입니다.

평의원 조중열 : 대학원 소위원회에서 표절이나 아니냐에 대하여 조사하실 건가요?

대학원장 안재환 : 네

평의원 조중열 : 지금 말씀하신 것은 표절과는 뉘앙스가 다른 것 같은데요.

< 간서명 란 >

의 

표절이라는 것은 훨씬 엄격한 잣대이거든요. 실제로 두 사람이 같이 일을 했으나 어떠냐와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것이 같아 보여도 표절이거든요.

대학원장 안재환 : 방금 말씀드린 요청사항1에서와 같이 표절이라는 말을 기술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대학원에 결과보고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대학원장 안재환 : 처리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최종 결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학위취소에 관한 것이고 6년 전에도 동일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마지막을 총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의원 조중열 : 제가 보기에 본 사항이 연구진실성 검증 조사위원회와 대학원위원회 중 어느 위원회에 속하는 것인지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대학원장 안재환 :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연구진실성 검증 조사위원회 조사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대학원위원회의 모든 조사결과를 연구진실성 검증 조사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학원에서 대학평의원회의 장께 보내드린 공문에도 ‘평가결과는 관련 학위자의 대학원에서 학위처리여부에 적용하는 한편 참조를 위해 그 결과를 연구진실성 검증 조사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하다’ 로 되어 있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논문 기술에 있어서의 유사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유사함이 분명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유사한 경우에도 표절로 인정하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고 심의하여 그 평가결과를 외부위원을 포함한 소위원회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한 것입니까?

대학원장 안재환 : 대학원위원회에서는 학위논문 포맷, 즉 기술형식을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논문을 읽어 보았는데 미세한 차이는 있습니다. 2006년 학위 취득한 학생이 실험을 더 했습니다. 저희가 물어본 것은 그것이 학위논문으로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을 내릴 수 없으므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구 장치가 조금 다릅니다. 그것에 대하여 어떤 의미가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고 형식이라든지 결과 같은 것이 거의 같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심성 있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평의원 이해진 : 공대 학위논문으로서 석사학위, 박사학위로서의 내용상의

< 간서명 란 >

의 작성

유사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를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평의원 이해진 : 대학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험장치에 차이가 있고 실험을 더한 부분에 대하여 전문가한테 요청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의장 박영무 : 대학원위원회에서는 모든 것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학원에서 구성한 소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조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평의원 박철균 : 대학원장님 어느 정도의 표절이 되면 학위취소가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대학원장 안재환 : 그런 건 없죠. 두 학위논문이 차이가 있는 경우 2006년 박사학위 취득논문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으로서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의장 박영무 : 대학원 소위원회의 의견이 나오면 대학원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추진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까?

평의원 박철균 : 문 모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필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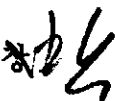
대학원장 안재환 :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잘못하면 법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입장에서는 대상이 우선 학생입니다. 학생이 앞의 학생의 논문을 도용했느냐가 중요한데 결국은 그렇게 되었을 경우 아시는 것처럼 이공계에서는 지도교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입장에서는 지도교수의 명을 따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가 급하게 특별히 잡은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사실 이것은 대학원위원회에서 평가할 문제라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되지만 연구윤리랑 관계가 있는 것이라서 예를 들어 30%는 데이터를 복사해서 쓰고 70%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갔다고 했을 때 70%만으로 봐줄만하니까 30% 복사한 것은 죄를 묻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1번 표절인가? 2번 나머지부분을 가지고 학위를 받을 만한가? 1번도 yes, 2번도 yes인 경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대학원장 안재환 : 대학원위원회를 믿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평의원 박윤규 : 만약에 신임총장이 이쪽으로 발령이 안 났다면 이 학생에

< 간서명 란 >

의 

대해서는 무관했던 거네요.

대학원장 안재환 : 대학원 입장에선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학교의 학위에 대한 권위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안 할 수 없습니다.

평의원 오동석 : 공대, 자연계 쪽에도 한국연구재단에서 나오는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동연구를 통해서 학위가 두 사람에게 따로따로 나갈 수 있는지? 하고 대단히 유사한 데도 불구하고 표절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표절기준에 비추어서 보면 쉽게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표절이라는 것은 외국 같은 경우에도 엄격하게 해석하여 몇 단어 연속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자체를 보고 표절이라고 판단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지를 보고 깊이 판단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표현하신걸 보면 대단히 유사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표절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표절이라고 하는 기준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대학원장 안재환 : 인정하기 어렵다는 말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확정짓는데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아시겠지만 대학원위원회 자체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대 교수, 경영대 교수 등이 계시고 백그라운드가 다릅니다. 저도 공과대학 교수지만 전공별로 개념이 다르고 굉장히 예민합니다. 기계공학전공, 물리학전공, 전자공학전공의 경우 같이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대학원에서도 오동석 평의원님 말씀처럼 대개 인문사회계 교수님들께서 여기서 결정내자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학생의 학위문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위원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평의원 박윤규 : 학생들의 논문에 대하여 잘되고 잘못되고 하는 결론이 난 다음에서야 이야기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의장 박영무 : 오늘 대학원장님께서 오신 것은 이 문제가 차기 총장에 관련된 문제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총장님 문제가 대학발전의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평의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명확히 기록으로 남겨서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까?

< 간서명 란 >

의 장 

평의원 이재호 : '표절로 인정하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표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는 굉장히 신중한 표현인 것 같고 그 뒤에 보면 '연구실험결과를 공유할 수는 없다는 것에 합의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실험결과를 공유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당연히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장 박영무 :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졸업논문 처리절차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것으로 하고 추후에 소위원회의 결과가 나오면 그때 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원장님 고맙습니다. 교무처장님 오셨습니까?

간사 김근태 : 오시지 않았습니다.

의장 박영무 : 두 번째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차기 총장 내정자 이수훈 교수의 부교수 및 정교수 승진에 관련된 실적물 의혹입니다. 제출된 논문에 7번, 8번 논문과 9번, 10번 논문이 짝으로 정확하게 같습니다. 9번, 10번 논문은 이름은 약간 변경시켰는데 내용은 같습니다. 10번 논문과 7번 논문이 아주대학교 부설연구소에 제출된 논문이며 부교수 논문심사 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8번, 9번 논문이 짝으로 똑같은데 정교수 승진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논문을 교무처장께 이 논문이 승진에 어떻게 이용되었는가? 그리고 부교수, 정교수 승진 연구실적의 몇 %인지? 이것이 승진에 이용되었다면 이수훈 교수의 승진이 타당한가? 거기에 대한 판단 자료와 답을 제출해달라고 교무처장께 요청했는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개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이중섭 교무처장은 오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지금 답변이 온 것을 첨부하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우리가 회의록을 남기는 방식이 녹취해서 PDF파일로 작성하므로 낭독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다음 의제로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장 박영무 : 교무처장이 왜 이걸 피하나요? 평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의원 김관균 : 이것은 중요한 문제인데 학교에서 빠른 시일 내에 매듭을 짓고 협조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협조가 잘 안되면 매듭을 짓는데 시간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아주인 이라고 하면 모두가 조속히 매듭짓기를 바랄 것입니다. 여기계신 모든 분들이 잘 협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박영무

의장 박영무 : 참고로 인사기재사항이 부정이 있으면 감독관청에서 이사장에게 요구하게 되면 취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교에서 계속 이것에 대한 자료를 거부하거나 이런 식으로 숨기려 한다면 교육과학기술부나 사정당국에 조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평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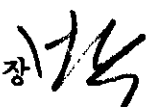
평의원 이재호 : 이 건을 교수회에서 공문을 보내고 그 다음에 교무처장을 잠깐 만나서 우리가 요청한 자료를 보내 달라 했더니, 공식적인 프로세스인 연구진실성 검증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그 논문들이 표절로 밝혀지면 그 논문들은 취소될 것이고 취소된 상황에서 승진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에서 공문을 보내온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빨리 움직여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독관청에 요구하려면 근거를 어떻게 제시해야 하는가? 논문을 보내 근거로 제시할 것인가? 아니면 교수회 자체 보고서를 제시할 것인가? 결국은 나중에 연구진실성 검증 조사위원회에서 나온 최종 결과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학평의회에서 감독관청에 공식적인 어떤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의장 박영무 : 최종적으로 여기에 대한 명확한 심사와 결과가 안 나오고 학교가 숨기려 한다면 사정당국이나 감독관청으로 조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이죠.

평의원 이재호 : 아마 독립적으로 연구진실성 검증 조사위원회가 운영될 것이라고 기대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는 최소한 보고서가 나오고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조치가 미흡해질 가능성은 있지만 보고서 자체는 나올 것입니다. 그 보고서에 대해서는 학교도 그렇고 재단도 그렇고 충분히 그것을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의원 조중열 : 또 다른 이야기는 지금 조사과정자체에 신임총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원천적으로 취임을 보류시켜야 한다. 그렇게도 감독관청에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관계 당사자이기 때문에 취임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만약에 감독관청에 이야기를 한다면 그 시점이 빨리 이야기 하는 게 오히려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사 끝나고 하는 것하고는 말이 다르지 않을까요?

< 간서명 란 >

의 장 

의장 박영무 : 사실은 문제의 복잡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조사책임자가 차기 총장입니다. 오동석 평의원님 그런 경우 법률적으로 어떻습니까?

평의원 오동석 : 당연히 본인이 관련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회피되거나...

평의원 박철균 : 지난번엔 연구처장의 의견을 들었고요. 오늘은 대학원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연구처장님께서 우리학교의 의사결정이 진행되는 경우 예를 들면 대학원의 경우 결재가 2.26(목) 났는데 오늘로서 소위원회 구성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면 저는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각 부서들은 신속하게 해결하려고 규정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절차들이 규정에 어긋나거나 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는 증거가 보인다면 저희가 조치해야 하지만 조사위원회 자체는 외부의 전문위원도 들어있고 저는 우리학교의 여러 진상조사위원회가 여러 차례 가동되었지만 충분히 독자적인 활동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무슨 외부의 입김내지 압력에 의해서 결과가 바뀌거나 하는 그런 사례는 우리학교에서 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결과도 규정대로 가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규정대로 가긴 하는데 규정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좀 ...

의장 박영무 : 교무처장이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평의원 박철균 : 저는 그 부분도 견해차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이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고 저희가 그 견해를 이해하든 하지 않던 그분의 견해는 나름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평의회 견해대로 무조건 따라와야 한다고 이야기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도 나름대로 연구진실성 검증 조사위원회에서 데이터를 요구하면 분명히 거기에 제출할 것입니다. 연구진실성 검증 조사위원회가 대학원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나온 데이터와 여러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해서 뭔가 판결을 내릴 건데 그 부분이 규정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대학교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그 일이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다들 공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일은 누가 봐도 규정대로 가는데 있어서 어떤 오차나 견해차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개인에 있어서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오늘도 대학원장님을 뵈었지만 사실 저는 능동적으로 잘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 간서명 란 >

의 장 박영무



부분은 조금 전 이재호 평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  
까 믿고 기다려 보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의장 박영무 : 교무처에 제기된 것은 진실성 여부를 떠나서 이수훈 교수 승  
진에 사용된 자료 논문이 무엇이냐 밝혀달라는 것인데 그것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진실성 여부는 교무처에서 상관할 바가 아니며 연구처에서 밝히는  
것입니다.

평의원 오동석 : 법률내용을 아직 못 봐서 그런데요. 앞에 있는 내용은 그런  
데 뒤에 있는 학교 내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은 여기에 합당한 해석  
이 아니고 전혀 엉뚱하게 해석을 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제공하지 않겠다’ 라는 전제가 작용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부서장이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때에 제공하면서 이것을 이런 목적  
에만 제한적으로 쓰십시오. 라든지 아니면 자료를 제공하지만 회의가 끝나면  
폐기시켜주십시오. 라든지 이런 의미에서의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를 하도록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일단 자료를 제공하고 자료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나  
중에 판단을 해야 하겠지만 일단은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제공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한다면 그 자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평의원회에  
게 요구하는 내용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하는 규정인 것이지 이것을 공개 요  
청하신 정보의 사용목적 및 방법을 제시해 달라 그러면 제공할 것이다. 이 규정  
의 의미는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제공을 전제로 그 다  
음에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추가적인 요구의 조치의 문제이지 제공  
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이것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입니다. 명백하  
게 규칙의 의미와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여 제공하지 못하겠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관련된 조문을 읽어보시면 외부에 있는 사람이 대학에 대해  
서 인사관리에 대하여 공개하여 달라고 하는 문제하고 대학평의원회는 학교  
안에 설치된 기관입니다. 물론 기관 내에서도 그런 것들이 지켜지는 것이 개  
인정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데 그런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따져봐  
야 할 문제인것이지. 마치 학부 중에 누가 하나가 하는 경우와 대학 안에서  
정관과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 법률조  
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을 검토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에도 왜

< 간서명 란 >

의 

그런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 단순히 조문만 의거하고 이 조문에 정당하게 의거했는지 적법하게 의거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철균 의원 말씀하신대로 단순히 부서장의 의견에 의하여 판단할 문제이지 그전에 예전에 논란이 된 대로 이 사안이 평의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은 여전히 의문일 것이라고 가정이긴 하지만 그 문제하고요 이게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제공을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문제는 부서장의 개인적인 의견에 의해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률인 것이고 설령 대학 내 규칙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부서장 맘대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서장 맘대로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한다. 나는 도저히 아무 정보도 제공할 수 없다. 라는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다른 여타의 기관기구들이 전혀 작동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해석의 의견이라고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또는 그런 문제에 국한된 것은 분명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의원 박철균 : 사실 각 부서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할 경우 오동석 평의원의 말씀대로 법률적으로 검토할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 법률자문 내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님들께 이 법률적 해석이 객관적이냐에 대한 자문을 받고 업무를 진행하는 게 중요하고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무처에서 외부 법률자문을 받고 했는지는 저도 알바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법률자문을 받는 것은 부서장의 선택사항이고 나름대로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개념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요구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겠다. 라는 하나의 의견을 제시해 온 것입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의 의견이라 보는 것입니다.

평의원 오동석 : 기본적으로 법이나 규칙이라는 것이 왜 존재하는가 생각해 보면 부서장을 맡고 있는, 행정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의 편의라든지 권한을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정보공개 법률을 만든 취지는 공공기관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일 때에는 이러한 관점에서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거조항이 과연 비공개대상 정보가 될 수 있는지 물론 연구업적자료, 심사평가 자료는 약간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

< 간서명 란 >

의 

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 봐서 사실을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한 판단을 하셨으면 그러한 사실을 적어 주시면 적어도 쉽게 납득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법률조문에 근거한 것이면 정말 법률에 근거하신건지는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평의원 김관균 : 근거법령에 근거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면 근거법령에 의해서 거부해야지 부서장의 법령해석을 가지고 거부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의원 오동석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평의원 김관균 : 본조사가 실시되면 타임 스케줄이 나오지 않습니까?

평의원 이해진 : 총장 내정자가 부적격이다 하면 차기총장 선출과정을 또 겪어야하죠? 그 동안에는 부총장이 총장대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평의원 이재호 : 3년 전에 고려대학교의 경우 이필상 총장이 총장취임 두 달 만에 사퇴를 하여 한승주 명예교수를 총장서리로 임명하였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누가 임명하나요?

평의원 이재호 : 재단이 임명하였습니다. 당시에 고대도 총장 직무대행인 부총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하고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이미 은퇴한 분을 총장 서리로 모시고 그 다음 과정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의원 오동석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조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9조 1항 5호에 인사관리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인사관리에 대한 내용이라고 해서 전혀 공개를 못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읽어 보면 인사관리 등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앞에 있는 인사관리 플러스 앤드 다른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공개를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것이죠. 이 사안은 오히려 거꾸로죠. 이것이 빨리 공개되고 해결되어야만 학교업무가 제대로 운영되는 것이고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나? 상당하다, 현저하다. 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을 제약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

< 간서명 란 >

의 

다.

평의원 이재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0조1항 및 3항은 어떻습니까?

평의원 오동석 :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보유목적의 문제거든요. 여기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문제는 보유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연구업적 문제는 이미 다 끝난 일이므로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절차가 잘못되어도 나중에 문제 삼을 수 없는 거잖아요? 연구의 업적자료나 승진자료를 마련하고 계속 보유하는 이유는 나중에라도 그것이 발전되면 그것 자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보유목적에는 합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총장으로서의 여러 가지 수행이라든지 승진에 필요한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폐기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보유하게 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해결시 그것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하여 누가 더 옳은지 과연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다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런 전지에서 보면 사실은 대학평의원회 규칙 제10조(출석 및 자료 요청)를 보면 ① 평의원회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교원, 직원 및 학생을 평의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교원, 직원 및 학생이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고 할 때 말씀하신 내용과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오히려 교무처에서는 평의원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라고 해석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장 박영무 :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조치사항은 없습니까?

평의원 이재호 : 없습니다.

평의원 김관균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가장 모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평의원 이재호 : 법률 전문가의 판단을 들으면서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평의원회에 국한해서 자료 공개하는 것을 거부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 간서명란 >

의 장



평의원 이해진 : 진행발언인데 심의안건 보고받고 논의할건 논의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평의원 이해진 : 당연하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교내에서 조항까지 따져가면서 자료제출을 안 해도 별 제재조치가 없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평의원 이해진 : 원래 그런 것이 아닌데 불투명하게 비취지니까...

의장 박영무 : 모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총장은 대학발전의 핵심입니다. 관련 자료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숨기고 회피하려는 것 그 자체가 의혹을 불러 일으킵니다.

평의원 박윤규 : 교무처장께서 자리를 회피하는 것은 요구하는 것이 몇몇하면 왜 안 나오겠습니까? 일반적인 생각에도 시간이 없어서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뻔 한 건데 의장께서 최대한 조치할 수 있을 만큼 조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평의원 김관균 : 교무처장께서 본인 의지를 가지고 참석 안하신 것이기 때문에 매듭을 짓는 의사결정을 하고 다음안건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평의원 이재호 : 어차피 오늘부로 교무처장을 그만두는 것이므로 기록에 남겨서 역사에 남기는 것 밖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의장 박영무 : 오동석 평의원 의견도 있고 대학평의원회 규칙에도 있듯이 교무처장이 이 문제에 대한 일체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빨리 결의를 하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작년, 올해를 보아도 평의원회 와서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결론은 아무것도 없고 심의한 내용이 대학 본부 측에 또는 재단 측에 조치가 내려져서 답변된 내용이 하나도 없고 사실상 평의원회 있다고 연락이 와서 가면 답답하기만 하고 진짜 시간 뺏기는 내용이라면 평의원회 목적을 우리 스스로 정해서 할 수 있는 내용과 할 수 없는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할 수 없는 내용은 접어 버리고 할 수 있는 내용만 가든지 교수위원, 외부위원, 직원위원, 학생위원이 계시는데 비생산적으로 시간 잡아먹는 게 안타깝습니다.

평의원 조중열 : 지금 감독관청에 총장취임 보류를 요청하는 권한이 누구에

< 간서명 란 >

의 장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교수들이 총장취임 보류를 요청했다는 것과 평의회에서 요청했다는 것은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의장 박영무 : 이해진 평의원님께서서는 동문회에 가서 그대로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의원 이해진 : 전 동문회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제가 서리로 학위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번에 나온 후배들 다음에 나온 후배들 서리 혹은 부총장으로 학위 나간 것이 아닌가? 해결기미는 안보이고 오늘 교무처장이 자료제출 안한 거 여기 와서 처음 알았는데 난감한 일이네요. 난감한 일을 가지고 여기계신 분들이 해어나갈 방법도 없는 것 같고...

의장 박영무 : 공문은 총장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서문호 총장과 이중섭 교무처장은 이수훈 차기 총장 내정자의 승진부정 관련 된 실적물 제출을 거부한 것은 합당하지 않다. 따라서 우리 평의회는 서문호 총장과 이중섭 교무처장은 이수훈 차기 총장 내정자의 부정승진 의혹에 대해서 숨기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의심한다. 따라서 가장 빠른 평의회회의에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법률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오동석 평의원님께서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의원 오동석 : 이 문제는 법률적으로 할 내용 아닙니다. 이해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문, 학생대표 등과 얘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이고 모이면 법규정화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라는 것도 지금 학교 내의 규정이지만 나중에는 법률로서 평의회 위상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단순히 경제적으로 계산되지 않는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법학 입장에서 보면 성가시고 귀찮고 간섭하는 것처럼 느끼셔서 그런데 학교 내에서 제대로 설정되면 크게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의원 이해진 : 제가 한 번도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서 원활하게 평의회가 진행되는 걸 못 보았습니다. 박영무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리를 잘해서 일단 다음에 어떠한 조치사항이 있는가 보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평의원 박윤규 : 총장님은 이임을 하셨고 교무처장도 끝나는 마당에 이야기

< 간서명란 >

의 장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들을 사람은 재단 쪽이고 교무처장은 대리인 밖에 안 됩니다. 공문은 직접적으로 재단에 발송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평의원 이해진 : 박윤규 의원과는 이견이 있습니다. 평의원회 조직은 총장산하에 있고 원칙적으로 따지면 재단하고 관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재단 쪽에 공문을 보내거나 해도 재단에서는 답변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여기의 핵심이 재단이다 청와대다 하는 것 보다는 총장님과 교무처장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내용이 분명히 재단에 고무가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진행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평의원 조중열 : 조금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결의사항에 다음 내용이 추가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조사과정을 새 총장이 임명한 처장들이 진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우려스럽게 보고 있고 그래서 그 처리가 조사내용에서 많이 벗어난다고 하면 모든 프로세스를 중지시킬 것을 건의한다. 일종의 경고인 셈이죠. 누가 프로세스를 진행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인 게 우리가 그것을 100% 믿고 맡기느냐 그것도 걱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사가 끝났는데 당신들이 했으니까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평의원 이재호 : 답변 공문에 대한 답변 공문으로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사실 총장이나 처장님을 꼭 적시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어차피 지금 총장 처장 이임하시니까 끝나는 일이므로 생각해 보면 총장하고 처장이 누구든 간에 그 자리 있는 분에게 보내고 그 자리에 있는 분이 책임을 가지고 답변을 하는 것이고 평의원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답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박영무 : 이재호 평의원과 오동석 평의원님께서 관계부서에 자료를 재요청할 수 있도록 문장을 조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구처에서 보내온 예비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비조사 결과>

- 해당교원 : 이수훈
  - 조사내용 : 해당교원의 논문에 대한 중복게재 유무 검증
  - 판정 : 예비조사결과에 따라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이러한 예비조사 결과는 유감스럽습니다. 예비조사를 했더니 이리이리하다

<간서명란>

의장



그러므로 더 조사를 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연구진실성 검증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하는지 연구진실성 검증 조사위원회 운영규칙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장 박영무 :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니깐 오해를 더 사는 것입니다. 예비조사를 했으면 예비조사를 어떻게 했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조사를 한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평의원 이재호 : 제보자한테도 그런 정도로 보고가 되는 것입니까?

의장 박영무 : 제가 교수회 의장이면서 평의원회 의장이므로 읽어 드린 것입니다.

평의원 오동석 : 지난번에 3가지만 해당되면... 내용까지 판단하기에는... 제대로 제기가 된 건지만 판단하는 게 있고...

평의원 이재호 : 그때 제대로 라는 것은...

평의원 오동석 : 형식적인 요건만 판단하기...

평의원 이재호 : 아닙니다. 한 가지 중요한 판단이 있습니다. 연구진실성 위반은 이것을 연구진실성 위반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본 조사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해당된다고 판단을 1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 2차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평의원 오동석 : 제보자에게만 하도록 되어있다고 규칙을 엄격하게...

평의원 이재호 : 보고서 내용이 저 정도가 전부라면 보고서로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평의원 이재호 : 연구진실성 검증 조사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에 보면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실제로 판단의 근거에 해당하는 것은 제6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에 있는데 제보내용이 제4조제1항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합니

< 간서명 란 >

의 



다.

평의원 오동석 : 2번째가 무엇입니까?

평의원 이재호 :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입니다.

평의원 오동석 :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승진이지 않습니까? 연구비라든가 문제가 아니고.

의장 박영무 : 지난 19차 대학평의원회에서 교무처에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수훈 차기 총장 내정자의 연구윤리 위반 자료 요청에 대해서도 교무처에서 똑같이 이름만 바꿔서 줄 수 없다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조중열 : 예비조사나 본 조사에서 위원이 누구라는 것을 공개하지 않는 게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평의원 이재호 : 본조사 위원은 제보자에게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평의원 조중열 : 제가 미국의 대학교에서 비슷한 것을 인터넷에 띄어 놓은 내용을 보았는데 조사자 이름이 나와 있었습니다. 기계공학부였고 기계공학부의 해당교수가 누구 인지는 나와 있지 않았는데 조사자는 누구인지 나와 있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지금 너무 과도하게 감추고 숨기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평의원 김관균 : 평의원회에서도 자료요청을 공식적으로 했는데도 거부하면 저희가 요청할 수 있을게 무엇이 있나요? 어떤 제재도 가할 수 없는 것이라면...

평의원 조중열 : 지금 현재 보직교수들이 임명하는 조사위원들을 임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찌 생각하면 좀 더 중립적인 사람들이 진행하는 게... 지금 아무 말 없으면 임명하는 것으로 되는 거지요? 지금 조사위원이 임명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평의원 이재호 : 전문성은 충분히 갖춘 것 같습니다.

평의원 조중열 : 대학원 소위원회 명단은 있습니까?

평의원 이재호 : 없습니다. 거기서 제보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의장 박영무 : 연구처 자료 추가 요청하는 것도 조금 전 교무처에 자료 요청

< 간서명 란 >

의 장 

하는 것과 동일하게 오동석 평의원님과 이재호 평의원님께서 작성을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훈 차기 총장 내정자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추가로 의견이 있습니까?

평의원 김용호 : 총장 내정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빨리 신속하게 총장을 모시든 못 모시든 조사가 빠르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는 정도로 의견을 모아서 의견을 했으면 합니다.

의장 박영무 : 교무처의 이수훈 교수의 승진부정의혹에 관한 조사 내용, 박사학위지도학생 논문표절 건, 논문이중게재를 위시한 학문윤리 위반 건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습니다. 이 문제가 엄중하고 신속하게 조사되어야 하는데 모두 동의 하였습니다. 평의원 만장일치로 해당 위원회에서 그렇게 할 것을 결의 하겠습니다.

평의원 김관균 : 연구진실성 검증 조사위원회, 대학원 소위원회 따로 보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록만 남깁니까?

의장 박영무 : 따로 작성을 해서 연구처, 교무처, 대학원에 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평의원 조중열 : 한 가지 추가할게 예비조사 결과가 나오면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도록 되어있는데, 진짜로 규정대로 했는지, 아니면 하라고 요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하는지... 아마 통보를 안했을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아마 예상되는 답변은 연구과제 부분에 대해서는 5년을 넘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장 박영무 :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

의장 박영무 :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학칙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안건 하나하나를 설명하고 질문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안건 설명을 쭉 보고 받고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입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평의원 전원: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간사 김근태 : 다음 학칙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 연구기관 “세포기능체연구소” 신설 [제6차 연구지원위원회 서면결의 회의(2009.12.3) 및 교무회의(2010.2.2) 심의의결]
- 일반대학원 “도시개발학과” 신설 [2009-7차 대학원위원회(2009.11.27) 심의의결]
- 산업대학원 “물류경영공학과” 신설 [산업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2009.10.21) 및 특수대학원위원회(2009.11.2) 심의의결]
- 보건대학원 “구강위생관리” 전공 신설 [보건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2009.10.22) 및 특수대학원위원회(2009.11.2) 심의의결]
- 인문대학 내에 “문화콘텐츠학전공” 신설, “문화학(연계전공)” 폐지 [교무회의(2009.4.21) 심의의결]
- 연계전공을 단과대학에서 분리하여 별도 표기
- "정보및컴퓨터공학부" → "정보컴퓨터공학부"로 명칭 변경 [교무회의(2010.2.2) 심의의결]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교수시간 내용 반영
- 금융공학과 사업배정 정원 변경(30명→25명)으로 인한 일반대학원 입학정원 조정 및 금융공학과 정원 별도 표기[2009-8차 대학원위원회(2010.1.22) 심의의결]
- 관련 조항에 금융공학과 내용 추가

의장 박영무 : 설명 감사합니다. 도시개발학과를 신설하면 TO는 어떻게 됩니까?


간사 김근태 : TO는 없습니다. 대학원은 통합정원으로 운영됩니다.

이재호: 금융공학과는 WCU사업 선정으로 정원이 추가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근태 : 네, 추가로 배정되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연계전공을 단과대학에서 분리해서 별도 표기 한다는 것은

< 간서명 란 >

의 

어떤 의미입니까?

간사 김근태 : 기초의과학(연계전공), 문화산업과 커뮤니케이션(연계전공)이 자연과학대학과 사회과학대학에 속해 있어 마치 연계전공이 그 대학에 소속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어느 소속에 두지 않고 연계전공만 별도로 모아서 분리하여 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전공이 대학과 학부에 속하지 않은 다른 예가 있습니까?

간사 김근태 : 연계전공 신설된 것이 2여년 정도 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러면 연계전공자체는 이해가 되는데 표기에 있어서 결국에는 대학이 있고 학부들이 있는 상황에서 학부 중에서도 어느 학부에도 속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적인 체계...

간사 김근태 : 행정적인 체계는 별도의 연계전공운영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는 주관학부가 있으며 그 대학/학부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러면 연계전공을 표기만 바꾼 거네요?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것과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군요.

평의원 박철균 : 검토를 충분히 하셨을 텐데, 원래 특수학부가 어느 학부에 소속하지 않는 학부를 전에 교양학부를 빼서 hierarchy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연계전공이 hierarchy가 없습니다. 혹시 이것이 특수학부에 속해야 하지 않습니까? 즉 특수학부 아래 가로줄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특수학부 아래의 가로줄이 빠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특수학부 안에 학부 없는 전공을 만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학부 아래의 가로줄을 없애는 방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근태 : 해당부서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평의원 박철균 : 문화콘텐츠학전공 신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 자료가 있습니까?

간사 김근태 : 회의 자료에 문화콘텐츠학전공 신설계획(안)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평의원 박철균 :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공신설은 신중해야 하는데 학생들이 해당전공을 이수한 후 진로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어떤 쪽으로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문화콘텐츠학부

< 간서명 란 >

의 장 

는 제 직감으로는 정규직 취업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신중한 검토 되었는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간사 김근태 : 그 부분은 회의 자료가 요약부분으로 되어 있어 그렇게 보이는 것이며 전공신설시 충분한 검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장 박영무 : 또 추가의견 있습니까? 특수학교 연계전공 표시상의 문제는 추후 오류가 없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콘텐츠 학생들의 취업과 관련하여 박철균 평의원의 좋은 지적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충분히 검토하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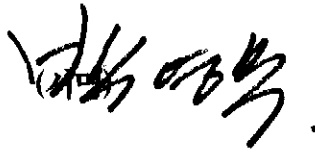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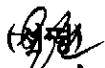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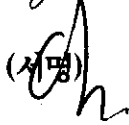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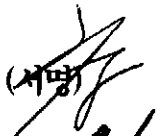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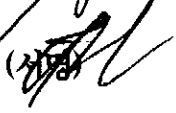
평의원 전원 : 없습니다.

의장 박영무 : 큰 절차상의 하자는 없고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할 내용 있습니까?

평의원 김관균 : 제가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평의원회가 자료협조 요청도 못 받고 있는데 나름대로 권위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회의하는 시간을 최대한 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의도중에 갈수도 없고 그래야 다음 일정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 박영무 :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2월 26일

의 장	박 영 무	
부의장	주 동 표	(서명)
평의원	조 중 열	
평의원	이 재 호	(서명)
평의원	오 동 석	
평의원	박 철 균	(서명)
평의원	임 재 수	(서명)
평의원	김 용 호	
평의원	임 원 형	
평의원	이 해 진	(서명)
평의원	김 관 균	
평의원	박 윤 규	
평의원	박 상 호	(서명)
기 록	진 성 호	(서명)

< 간서명 란 >

의 장